

제327회 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도 4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2024. 12.

정원도시국

(총괄) 4분기 간주처리예산 내역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

4분기 간주처리 내역 : 4건, 1,518,498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주관부서	간주내역	금회간주	비고
		합계 (4건)	1,518,498	
1	정원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1,600	10월 7차
2	자연생태과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영축산근린공원)	1,500,000	10월 7차
3	동물보호과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국비)	1,898	10월 7차
4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자체)	15,000	12월 9차

붙임 : 사업별 간주처리 내역 보고 각 1부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 정원도시정책과 〉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

□ 간주처리 내역 및 사유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 : 1,600천원
 - 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대상: 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중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5,945천원) 이하 세대
 - 내용: 학자금, 전기료, 의료비 등 세대별 60~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급
 - * (차등지급) 기준소득 대비 91~100% 60만원, 81~90% 70만원, 71~80% 80만원, 61~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 ** (재정자립도별 국비지원) 40%초과 → (차등지급비)×70%, 30%초과~40%이하 → (차등지급비)×80%, 30%이하 → (차등지급비)×90%
- 추진사항
 - 24. 07. 01. 생활비용보조 신청 요청(국→시)(국토부 녹색도시과-3701호)
 - 24. 07. 02. 생활비용보조 신청 요청(시→구)(정원도시정책과-119호)
 - 24.07.~08. 신청서 공고·접수 및 자격 조회(자치구)
 - 24. 08. 27. 생활비용보조 국고보조금 신청(시→국)(정원도시정책과-3036호)
 - 24. 09. 11. 생활비용보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국→시)(국토부 재정담당관-9583호)
 - 24. 09. 12. 생활비용보조 교부계획(안) 알림(국→시)(국토부 녹색도시과-4986호)
 - 24. 09. 19. 10월 간주처리 일정 안내(예산담당관-10998호)
 - 24. 09. 30. 간주처리 요청(정원도시정책과-4844호)

붙임 : 간주처리 세부 내역 및 근거 서류(교부결정 통지 공문) 각 1부

○ 제7차 간주처리 세부 내역

- 세입예산

(단위: 천원)

세입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70,000	1,600	1,571,600

- 세출예산

(단위: 천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소 계				(×1,570,000) 2,050,000	(×1,600) 1,600	(×1,571,600) 2,051,600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570,000) 2,050,000	(×1,600) 1,600	(×1,571,600) 2,051,600

- 자치구 교부 현황

(단위: 천원)

자치구	지원대상	사업비			매칭 비율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2,000	1,600	400		
종로구	1세대	1,000	700	300	7:3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 지원
강북구	1세대	1,000	900	100	9:1	

○ 제7차 간주처리 근거 서류

-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9583호(2024. 9. 11.)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개발제한구역관리, '24년 8차)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846(2024.9.2.)호 관련입니다.

2. 202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개발제한구역관리'의 주민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사업관리자 및 보조사업자는 교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담당자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김효은주(044-201-3744)

붙임 1. 교부결정 통지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4년 8차) 1부.

2. '24년 개발제한구역 교부결정현황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녹색도시과장, 기획재정부장관(국토교통예산과장)

주무관

류준하

시설사무관

전진

재정담당관

전결 2024. 9. 11.

배성호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9583

(2024. 9. 11.)

접수 정원도시정책과-3987

(2024. 9. 11.)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247

/전송

044-201-5518

/ rjh510mx@molit.go.kr

/ 비공개

○ 제7차 간주처리 근거 서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986호(2024. 9. 12.)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4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안) 알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24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4년 생활비용보조 교부계획(안)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정원도시정책과장), 부산광역시(도시공간계획과장), 대구광역시(도시계획과장),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장), 대전광역시(도시계획과장), 울산광역시(도시계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시과장), 경기도지사(지역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균형발전과장), 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 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 경상남도지사(도시정책과장)

사무관대우 김효은 행정사무관 박종근 녹색도시과 전결 2024. 9. 5.
장 장구중

협조자

시행 녹색도시과-4986 (2024. 9. 12.) 접수 정원도시정책과-4053 (2024. 9. 12.)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44 /전송 044-201-5574 / khe973245@molit.go.kr / 부분공개

〈2024년 생활비용보조사업 교부계획(안)〉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현황(2024)							(단위: 원, %)
사·도	사·군·구	지원대상 선정현황			사업비			매칭비율	
		신청세대	선정세대	제외세대	계	국비	지방비		
12개 시도	합계	534	319	215	304,121,330	251,907,000	52,214,330	82.81%	
서울	계	2	2	-	2,000,000	1,600,000	400,000	국비	
	강북구	1	1	-	1,000,000	900,000	100,000	90%	
	종로구	1	1	-	1,000,000	700,000	300,000	70%	
부산	계	116	62	54	58,921,330	41,927,000	16,994,330	국비	
	북구	1	1	-	1,000,000	900,000	100,000	90%	
	해운대구	1	1	-	1,000,000	800,000	200,000	80%	
	강서구	110	56	54	53,100,000	37,170,000	15,930,000	70%	
	기장군	4	4	-	3,821,330	3,057,000	764,330	80%	
대구	계	25	21	4	19,600,000	17,450,000	2,150,000	국비	
	동구	6	6	-	5,300,000	4,770,000	530,000	90%	
	북구	9	5	4	4,600,000	4,140,000	460,000	90%	
	수성구	2	2	-	1,900,000	1,520,000	380,000	80%	
	달성군	8	8	-	7,800,000	7,020,000	780,000	90%	
광주	계	24	17	7	15,500,000	13,950,000	1,550,000	국비	
	북구	1	1	-	1,000,000	900,000	100,000	90%	
	광산구	23	16	7	14,500,000	13,050,000	1,450,000	90%	
대전	계	108	72	36	69,600,000	60,440,000	9,160,000	국비	
	동구	23	23	-	23,000,000	20,700,000	2,300,000	90%	
	중구	13	12	1	10,600,000	9,540,000	1,060,000	90%	
	서구	12	11	1	10,000,000	9,000,000	1,000,000	90%	
	유성구	56	22	34	22,000,000	17,600,000	4,400,000	80%	
	대덕구	4	4	-	4,000,000	3,600,000	400,000	90%	
울산	계	18	12	6	12,000,000	9,700,000	2,300,000	국비	
	중구	2	2	-	2,000,000	1,800,000	200,000	90%	
	남구	3	1	2	1,000,000	800,000	200,000	80%	
	북구	5	4	1	4,000,000	3,600,000	400,000	90%	
	울주군	8	5	3	5,000,000	3,500,000	1,500,000	70%	
세종	계	5	5	-	5,000,000	3,500,000	1,500,000	국비	
	세종특별자치시	5	5	-	5,000,000	3,500,000	1,500,000	70%	
경기	계	138	50	88	47,300,000	38,740,000	8,560,000	국비	
	고양시	12	9	3	9,000,000	7,200,000	1,800,000	80%	
	화성시	80	8	72	7,000,000	4,900,000	2,100,000	70%	
	부천시	1	1	-	1,000,000	800,000	200,000	80%	
	남양주시	8	7	1	6,300,000	5,040,000	1,260,000	80%	
	안산시	1	1	-	1,000,000	800,000	200,000	80%	
	시흥시	2	2	-	2,000,000	1,400,000	600,000	70%	
	의정부	6	4	2	3,600,000	3,240,000	360,000	90%	
	군포시	1	1	-	1,000,000	800,000	200,000	80%	
	양주시	12	6	6	5,700,000	5,130,000	570,000	90%	
	구리시	2	2	-	2,000,000	1,600,000	400,000	80%	
양평군	13	9	4	8,700,000	7,830,000	870,000	90%		
충북	계	12	6	6	5,900,000	4,720,000	1,180,000	국비	
	청주시	12	6	6	5,900,000	4,720,000	1,180,000	80%	
전남	계	47	41	6	37,700,000	33,930,000	3,770,000	국비	
	나주시	28	25	3	24,100,000	21,690,000	2,410,000	90%	
	담양군	14	12	2	9,600,000	8,640,000	960,000	90%	
	장성군	5	4	1	4,000,000	3,600,000	400,000	90%	
경북	계	19	15	4	14,700,000	13,230,000	1,470,000	국비	
	경산시	2	2	-	2,000,000	1,800,000	200,000	90%	
	철곡군	17	13	4	12,700,000	11,430,000	1,270,000	90%	
경남	계	20	16	4	15,900,000	12,720,000	3,180,000	국비	
	창원시	14	12	2	12,000,000	9,600,000	2,400,000	80%	
	김해시	6	4	2	3,900,000	3,120,000	780,000	80%	

2.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 자연생태과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

간주처리 내역 및 사유

-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 1,500,000천원
 - 영축산 근린공원 내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
 - ※ 산림청 목재산업과-1091호(2024. 3 .4.)

붙임 : 간주처리 세부 내역 및 근거 서류(교부결정 통지 공문) 각 1부

○ 제7차 간주처리 세부 내역

-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입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511-03 (국고보조금)	-	1,500,000	1,500,000

- 세출예산

(단위:천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소 계				(×)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시설비 (401-01)	(×)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 제7차 간주처리 근거 서류

- 산림청 목재산업육성-1091호(2024. 3. 4.)

자연생태과 석명오 2024-10-22 14:51:18

산불예방, 숲을 키우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산 립 청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중심의 나라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목재산업육성(농특회계) 국고보조금 1차 교부 알림

- 2024년 목재산업육성 예산 집행과 관련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신청된 목재산업육성(농특회계)예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교부하오니, 해당 예산을 사업 지침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목재친화도시 조성 및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 활용 및 산림청 목재정보서비스에서 발급되는 국산목재 이력정보 확인서를 발급받아 추후 정산보고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목재정보서비스 주소 : winz.forest.go.kr
- 아울러,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목재산업육성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1차) 1부.

산 립 청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자연생태과장),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장), 대구광역시(산림복지과장), 인천광역시(녹지정책과장), 대전광역시(산림복지과장), 강원특별자치도(산림정책과장), 충청북도(산림복지과장), 충청남도(산림자원과장), 전북특별자치도(산림복지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산림자원과장)), 경상북도(산림자원과장), 경상남도(산림관리과장)

산림주무관 고정호 시설사무관 이성진 목재산업과 전결 2024. 3. 4.
장 조영희

협조자

시행 목재산업육성-1091 (2024. 3. 4.) 접수 자연생태과-4729 (2024. 3. 4.)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목재산업과 (둔산동) / <http://www.forest.go.kr>전화 042-481-4291 /전송 042-471-1446 / ho5735@korea.kr / 비공개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국비)

〈 동물보호과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

간주처리 내역 및 사유

-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국비) : 1,898천원
 - 국고보조금이 2023년 통보된 확정내시 금액보다 증액(조달수수료분)되어 교부됨
-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3983호(2024.7.19.)

붙임 : 간주처리 세부 내역 및 근거 서류(교부결정 통지 공문) 각 1부

작성 자 | 동물보호과장 : 이미숙 ☎2133-7645 동물보건팀장 : 김연주 ☎7651 담당 : 조은정 ☎7654

○ 제7차 간주처리 세부 내역

-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입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511-01 (국고보조금)	297,871	1,898	299,769

- 세출예산

(단위:천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소 계				(×297,871) 436,712	(×1,898) 1,898	(×299,769) 438,610
선진형 동물보호 시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 강화	가축방역-예 방약품 등 지원(국비)	사무관리비 (201-01)	(×35,964) 54,120	0	(×35,964) 54,120
선진형 동물보호 시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 강화	가축방역-예 방약품 등 지원(국비)	공공운영비 (201-02)	(×12,177) 24,354	0	(×12,177) 24,354
선진형 동물보호 시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 강화	가축방역-예 방약품 등 지원(국비)	재료비 (206-01)	(×249,730) 358,238	(×1,898) 1,898	(×251,628) 360,136

4.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자체)

〈 동물보호과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

간주처리 내역 및 사유

- 제9차 : 1건, 15,000천원

-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자체) : 15,000천원

2024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로 15,000천원이 교부됨

※ 서울시 재난안전정책과-8454호(2024.11.20.)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4776호(2024.11.19.)

붙임 : 간주처리 세부 내역 및 근거 서류(교부결정 알림 공문) 각 1부

작성 자 | 동물보호과장 : 이미숙 ☎2133-7645 | 동물보건팀장 : 김연주 ☎7651 | 담당 : 조은정 ☎7654

○ 제9차 간주처리 세부 내역

-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입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201-01 (사무관리비)	24,672	15,000	39,672

- 세출예산

(단위:천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소 계				24,672	특 15,000	39,672
선진형 동물보호 시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 강화	가축방역- 예방약품 등 지원(자체)	사무관리비 (201-01)	24,672	특 15,000	39,672

○ 제9차 간주처리 근거 서류

- 서울시 재난안전정책과-8454호(2024.11.20.)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울특별시



수신 동물보호과장

(경유)

제목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알림)(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4776호(2024. 11. 19.) 관련입니다.
- 2024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이 붙임 문서와 같이 통보되어 알려 드리오니, 특별교부세 운영 지침에 따라 철저히 집행관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교부기관)	사업명	교부결정액	소관부서	자금송금 예정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15	동물보호과	'24.11.21.(목)

나. 교부조건 및 용도 : 붙임4 특별교부세 운용지침에 따라 부서에서 집행

다. 행정사항 : 세입 및 간주처리 후 예산집행

- 붙임 1. 교부결정 공문 1부.
2. 교부결정내역 1부.
3. 자금송금내역 1부.
4.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1부. 끝.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현중

주무관 이지원 재난수습팀장 조현범 재난안전정책11/20
과장 김현중

협조자

시행 재난안전정책과-8454 (2024. 11. 20.) 접수 동물보호과-9150 (2024. 11. 20.)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25 / 전송 02-2133-8025 / jiwon6234@seoul.go.kr / 부분공개(5)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4776호(2024.11.19.)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보하오니 동 사업비가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자치단체	사 업 명	교부결정액	비 고
	“불임참조”		

붙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내역 1부(별첨).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재난안전정책과), 부산광역시(예산담당관), 대구광역시(예산담당관), 광주광역시(예산담당관), 울산광역시(예산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예산담당관), 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예산과장), 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 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예산과장), 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주무관 *김영호*

과학기술서기관 *현준일*

재난관리정책과장 *이은성*

재난관리정책국장 *박영우*

자연재난실장 *오영찬*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항경*

장 관 *이성민*

시행 재난관리정책과 - 4776 (2024. 11. 19.) 접수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4호)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5126 전송 044-205-8940 / bung7@korea.kr / 비공개(5)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내역

(단위:원)

시도	단체별	사업명	교부결정액
총계			15,000,000
서울	본청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15,000,000

(교부조건 및 용도)

- 지원용도 :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소독활동비 등 가축전염병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
 - ♣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가축질병재난대응과(044-205-6195)와 협의
- 집행잔액은 가축전염병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 재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사용 가능
 - 재난안전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 운용지침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필요